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2서식] <개정 2014.8.7>

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
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
폐업업종 및 등록번호

폐업하고자 하는 업종	등록번호

폐업 사유

1. 당사사정 □ 사업포기 □ 회사부도 · 파산

2. □ 그 밖의 사유( )

「골재채취법」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첨부서류	골재채취업 등록증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결재	→	결과 통보
신청인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